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을 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개관 이래 변동되지 않았던 사용료를 인상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사용취소 조항 개정(안 제4조)

나. 홍보관, 다목적실, 전시실 사용료 인상(안 별표)

· 현재 : 900원/m² → 인상안 : 1,000원/m²

다. 시설 명칭 변경 및 야외전시장 사용료 추가(안 별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시장”을 “이하 ”시장”으로, “받아야”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을 “취소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등에게”를 “등에 산업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관, 다목적실,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등의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홍보관, 다목적실,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산업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 ----- -이하 "시장"------ --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 <후단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
제4조(사용의 제한 등) ① (생략)	제4조(사용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 ----- ----- - 취소할 ----- -----.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① ----- ----- ----- ----- ----- 등에 산업관을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산업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제8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제9조(시행규칙) -----
필요-----
-----.

■ [별표] 전시실 및 회의실 등 사용료(제3조제2항 관련)

1. 전시실 등 사용료

구분				사용료(부가세 별도)	비고
장소별	1층	홍보관	홍보관1홀 (369㎡)	1,000원/㎡	08:00~20:00
			홍보관2홀 (375㎡)		
			홍보관3홀 (346㎡)		
	다목적실(223㎡)		500원/㎡		
	2층	전시실(3,402㎡) (2개홀 분할가능)			
	옥외	야외전시장			
할인할증	할인		1,2,7,8,12월 전체사용	50% 10%	
	할증		1개실 미만사용	10%	
시간외 사용료	전시실 기본 사용시간(08:00~20:00)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를 가산함.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2. 회의실 사용료

층수	시설 명	실수	면적 (㎡)	사용료(단위:원, 부가세 별도)						
				오전 (09~12)	오후 (13~17)	야간 (18~21)	전일 (09~17)	반일 (13~21)	종일 (09~21)	시간당 초과요금
3층	대회의실	1실	452	531,000	815,000	475,000	1,265,000	1,439,000	1,952,000	177,000
	중회의실	1실	223	262,000	402,000	234,000	624,000	710,000	963,000	87,000
		(2실 분할)	111	157,000	241,000	140,000	374,000	426,000	578,000	52,000
	소회의실	1실	278	326,000	501,000	292,000	778,000	885,000	1,200,000	108,000
		(2실 분할)	139	196,000	300,000	175,000	467,000	531,000	720,000	64,000
		(4실 분할)	69	106,000	162,000	95,000	252,000	287,000	390,000	35,000

※ 비고 : 시간당 초과 요금은 30분이상 1시간 이하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한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백인엽
	담 당	장웅재
	담 당 자	박현주 (480-6153)